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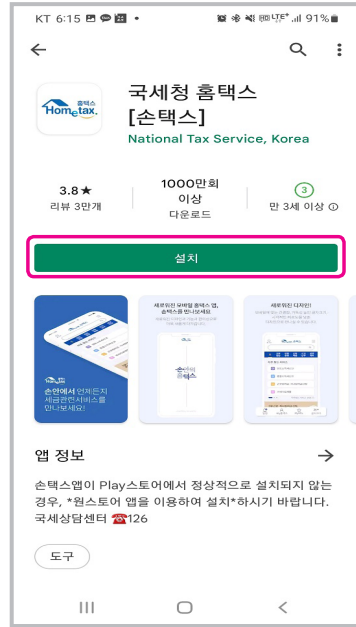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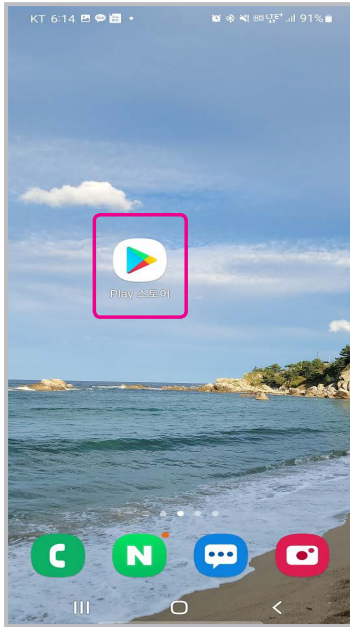
근로소득자 스마트폰 신고

(공제 추가 및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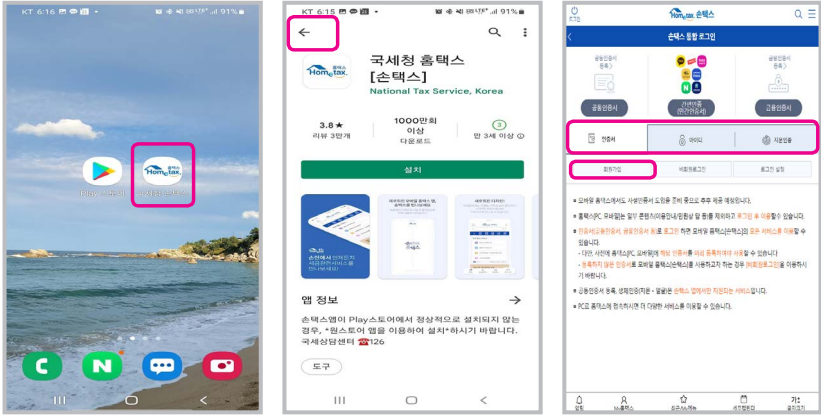
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내려 받기

- 근로소득 신고자를 위한 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 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 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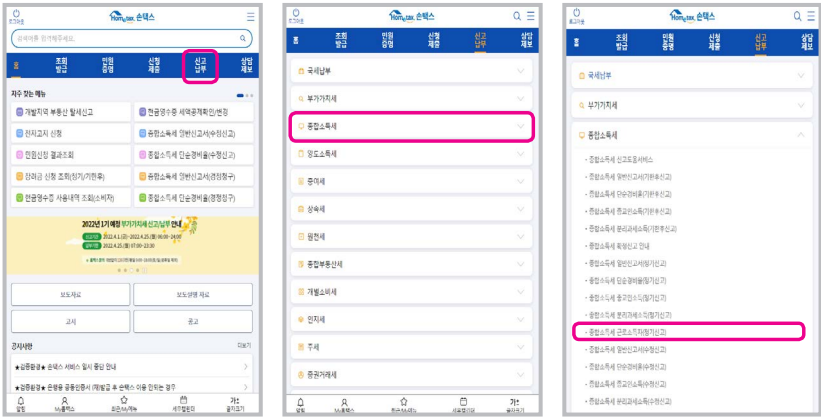


-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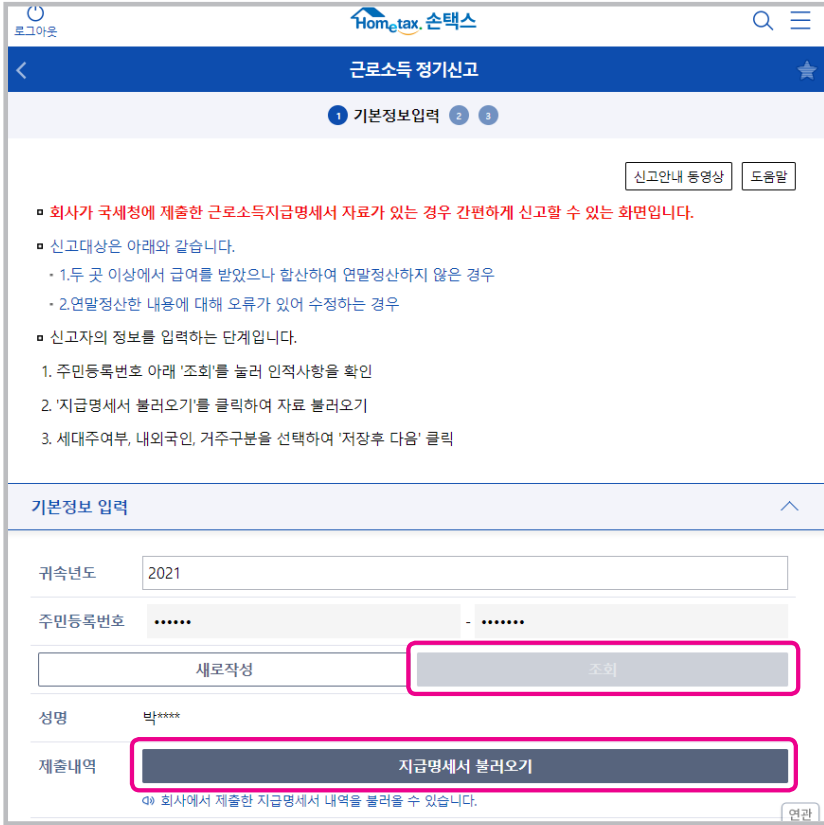


-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됩니다.



- 손택스에서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누른 후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제공된 신고내용 중 총급여액이 다르거나,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아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 성명 아래 제출내역 항목에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 상호를 선택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	상호 및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 ▼

닫기

선택사항 적용

-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가 보여지며, 상호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 상호를 선택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	상호 및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 ▼	
		구분	주 ****
		근무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총급여액	21,230,000
		결정세액	174,979

닫기

선택사항 적용

- 급여, 공제란을 체크하고 **[선택사항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1 기본정보입력 2 3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

성명

제출내역
☞ 회사에서 제출한 지금명세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세대주 여부

내·외국인

거주구분

거주지국
 대한민국

저장 후 다음

- 조회된 기본정보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근무지별 소득명세의 급여항목이 총급여항목에 합산되어 보이며, 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근로소득 정가신고

1 2 신고서 입력 3

☞ 아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완료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근무지별 소득명세 ^

NO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계
1	미 ****	***** - ** - *****	21,230,000	0	0	21,230,000

☞ 종전 근무지의 급여가 '(21)총급여' 항목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총급여	21,230,000 원
22	근로소득공제	8,434,500 원
23	근로소득금액	12,795,500 원

인적공제 명세 ^

24 본인	1,500,000 원
25 배우자	0 원
26 부양가족 (0명)	0 원
27 경로우대 (0명)	0 원
28 장애인 (0명)	0 원
29 부녀자	0 원
30 한부모가족	0 원
소계	1,500,000 원

🗨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입력/수정하기

- 아래에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인적공제명세 목록에서 새로 인적공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 번호

..... - 조회

성명 장**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관계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v

인적공제 항목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초기화
등록

- 인적공제 입력창이 나타나며,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관계, 인적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선택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1*****	박**	소득자 본인	여	부	부	부	부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3*****	장**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여	부	부	부	부	내국인

삭제
수정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원
2. 배우자	0 원
3. 부양가족(1명)	1,500,000 원
4. 70세 이상인 자(0명)	0 원
5. 장애인 (0명)	0 원
6. 부녀자	0 원
7. 한부모가족	0 원
8. 인적공제 계	3,000,000 원

닫기
입력완료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 후 [수정/삭제]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31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0 원
32 공무원연금	0 원
군인연금	0 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0 원
별정우체국연금	0 원
33 건강보험료	0 원

계산하기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내리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 항목들은 해당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건강고용) 공제 계산기 ✕

○ **지출금액 입력**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100,000"/>	100,000 원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③ 소계(①+②)		100,000 원
공제대상금액		0 원
세액공제액		0 원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팝업창이 뜨면 납입금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거주자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34-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15년~29년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30년 이상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비거치식대출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기타대출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14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	--	-----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0"/>	0 원

그 밖의 대출		0 원
35 기부금(이월분)		0 원
36 특별소득공제 계 (33+ ~ +35)		100,000 원
37 차감소득금액		9,195,500 원
그 밖의 소득공제 ^		
38 개인연금저축	<input type="text" value="0"/>	0 원
	<small>49 2000.12.31. 이전가입</small>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input type="text" value="0"/>	0 원
40 주택마련저축 합계		0 원
청약저축		0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0 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원
41 투자조합 출자 등		0 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0 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input type="text" value="0"/>	0 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귀속까지 해당)		0 원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input type="text" value="0"/>	0 원
45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input type="text" value="0"/>	0 원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원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9,195,500 원
49 산출세액		551,730 원

아래로 내리면, 차감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

총 급여액		21,230,000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5,500,000 원
① 전통시장 사용액	<input type="text" value="100,000"/>	100,000 원
② 대중교통 이용액	<input type="text" value="100,000"/>	100,000 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input type="text" value="300,000"/>	300,000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④ 신용카드 사용액	<input type="text" value="5,000,000"/>	5,000,000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합계 = (5-1) + (5-2)		0 원
(5-1) 신용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input type="text" value="0"/>	0 원
(5-2)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input type="text" value="0"/>	0 원
2020년 전체 사용분	<input type="text" value="0"/>	0 원
2021년 전체 사용분		5,500,000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627,000 원

- 다시 아래로 내려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고,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 팝업창이 뜨면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른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아래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세액감면	
50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제59조의 5)	0 원
5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0 원
Q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0 원
Q8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53 조세조약 (원어민교사 등)	0 원
54 세액감면 계	0 원

-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282,760 원
56 공제대상자녀	1 명
금액	150,000 원
출산·입양자	명
금액	0 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57~60 연금계좌 합계(57~60)	계산하기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57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0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1 보장성보험료 합계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1-1 일반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4 기부금 합계

0 원

64-1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4-2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4-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4-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4-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5 특별세액공제 계(61+ ~ +64)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66 표준세액공제	130,000 원
67 납세조항공제	0 원
68 주택차입금	0 원
69 외국납부	0 원
70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다음은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이며, 해당있는 항목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항목별 해당 내용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

도움말

○ **납입금액 입력**

① 일반 보장성보험	100,000 원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원
③ 소계(①+②)	100,000 원
공제대상금액	100,000 원
세액공제액	12,000 원

+- 계산

닫기

적용

65 특별세액공제 계(61+ ~ +64)	
공제대상금액	100,000 원
금액	12,000 원
66 표준세액공제	130,000 원
67 납세조합공제	0 원
68 주택차입금	0 원
69 외국납부	0 원
70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0 원
금액	0 원
<p>71 전자신고세액공제</p> <p>「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p>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원
71 세액공제 계	584,760 원
납부(환급)세액	
72 결정세액(49-54-71)	
소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소득세	174,979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74 차감납부할 세액(72-73)	
소득세	-174,979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75 납부특례세액차감	
소득세	0 원
75 납부특례세액가산	
소득세	0 원

-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76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소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77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소득세		-174,979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거래은행 및 계좌정보 ⌵

환급 계좌은행 광주은행 ⌵

환급금
계좌번호 123315633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거래은행 및 계좌정보 화면에 본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회사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

- 화면을 아래로 내려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아래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내용 요약		^
○ 기본정보		
소득자	박***(****_****_****)	
귀속년도	2021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12,795,500원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8,668,50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520,11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납부(환급)할 총 세액		
종합소득세	-174,979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small>도원 영자</small>		
○ 납부특례세액		
차감 종합소득세	0 원	
가산 종합소득세	0 원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종합소득세	-174,979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환급계좌정보		^
금융회사	광주은행	
계좌번호	12*****	

그로소득 정기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도 스마트폰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택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사용자 ID	p****
사용자명	박****
접수번호	608-2022-*****
접수일시	2022-04-19 00:52:02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박****
사업자(주민)등록번호	*****_*****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모바일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상세내역	
과세연월	2021-0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668,500원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할세액	-174,979원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174,979원
농어촌특별세 납부(환급) 할세액	0원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원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닫기
신고내역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